

공고 제2024-242호

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일

구 리 시장



도로의 종류	일반도로	노선명	-
점용의 목적	검배체육센터 가스관 연결	점용기간	허가일로부터~2032.12.31.
점용의 장소	수택동 356-23 일원	점용면적	일시 50㎡
점용물의 종류	오수관	공사기간	허가일~ 2024.10.31.
공사 방법	노면굴착	굴착 시 교통대책	신호원 배치후 통행유도
도로의 복구방법	원인자 원상복구	도로굴착	-
점용자의 주소·성명	평생학습과	그 밖의 사항	-